

소비자 제품 안전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Product Safety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OECD 소비자 제품 안전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Product Safety)

본 문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문은 OECD 법률 문서의 사본이며 추가 자료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서 표명된 의견과 채택된 논의는 반드시 OECD 회원국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본 문서와 문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와 지도는 어떠한 영토에 대한 지위나 주권, 국경이나 경계의 분계 그리고 영토, 도시 또는 지역명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번역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OECD에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의 공식 영문 및 불문 버전은 OECD 웹사이트 <https://legalinstruments.oecd.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경 정보

소비자 제품 안전에 대한 권고문(이하 ‘권고문’)은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이하 ‘CCP’)의 제안으로 OECD 이사회에 의해 2020년 7월 17일에 채택되었습니다. 권고문은 국내외 소비자 제품 안전 체계의 핵심에 자리해야 할 요소들을 개관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권 간에 제품 안전 규정과 용어에 일관되게 접근할 것을 장려합니다. 권고문은 1977~1989년 기간 동안 CCP가 제안하고 OECD 이사회가 채택한 소비자 제품 안전에 관한 6개의 OECD 법률 문서(OECD 소비자 제품 안전 규범(acquis))를 통합하고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권고문 개발을 위한 OECD의 제품 안전 및 근거 관련 작업

OECD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CCP와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Working Party on Consumer Product Safety, 이하 ‘WPCPS’) 활동을 통해 국제 소비자 제품 안전 정책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CCP와 WPCPS는 조사, 분석, 정책 가이드런스 문서를 작성했으며, 다양한 소비자 제품 안전 이슈 관련 국제 점검활동(sweeps)과 소비자 인식 캠페인을 시행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간 WPCPS의 주된 관심 분야는 제품 리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행동학의 통찰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WPCPS는 국제적인 제품 리콜 효과 개선에 관한 기초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곧 정책 가이드언스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WPCPS는 전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화를 고려해 전자상거래 및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과 관련된 제품 안전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작업해왔습니다. 2018년 WPCPS는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사물인터넷의 소비자 제품 안전에 관한 기초 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WPCPS는 47개국이 넘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소비자제품 리콜 정보를 통합 게시하며 점차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OECD 글로벌리콜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OECD 사무총장이 OECD 문서 전체를 강화할 목적으로 착수한 OECD 전체 차원의 규범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2017년 CCP와 WPCPS는 OECD 소비자 제품 안전 규범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 권고문은 CCP와 WPCPS가 지난 40년 간 수행해온 작업에 기반합니다. 특히 신기술, 국경 간 거래 증대, 더욱 복잡해진 공급망 국제화가 야기하는 소비자 제품 안전의 현 과제와 신규 과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고문 범위

본 권고문은 강력한 소비자 제품 안전 규제와 정책 체계의 구축을 요구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체계를 요구합니다.

-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에 대한 권리와 함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시판 중이거나 유통 금지 또는 리콜 대상일 때 신속히 통보 받을 권리를 제공할 것
- 인식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위해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국가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체계적인 위해 관리 및 평가 접근법 개발, (CCP를 통한) 정보 공유 활동 등을 통해 타당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할 것
- 취약 소비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권고문은 제품 안전 규정의 역동적인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적절성과 효과성을 유지하도록 어느 정도 유연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권고문은 특히 오프라인 매장과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와, 제품 설계, 제조, 인증, 유통, 유지보수 관계자를 포함한 공급망의 행위자 전체에 적용됩니다. 권고문의 이러한 내재적 유연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발생하는 제품 안전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맥락에서 지속적인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권고문은 WPCPS의 권한(mandate)에 따라 개별 특수성을 지닌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제외한 소비자 제품에 적용됩니다.

권고문은 CCP와 WPCPS 대표단, 그 외 관련 OECD 기구들, 업계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본질적으로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후속조치, 시행 모니터링 및 확산 수단

WPCPS는 권고문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핵심 조항에 대해 이해하고, 권고문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부속문서(companion document)를 개발하여 권고문 시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제품 리콜과 관련해서는 리콜 효과성에 관한 정책 가이드런스도 발간해 권고문 시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WPCPS는 권고문 시행 경험뿐만 아니라 소비자 제품 안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비자 제품 안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고 하십시오:

<http://www.oecd.org/internet/consumer/consumer-product-safety.htm>

연락처 : sticonsumerproductsafety@oecd.org 또는 consumer.policy@oecd.org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의 제5조 b를 유념한다.

본 권고문이 대체하는 소비자 제품 관련 위해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OECD/LEGAL/0160]; 소비자 제품 안전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OECD/LEGAL/0183]; 시판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리콜 절차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OECD/LEGAL/0192]; 제품 안전 분야의 위해관리 및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OECD/LEGAL/0196]; 어린이를 위한 안전 조치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OECD/LEGAL/0208]; OECD 소비자 안전 조치 통보 시스템에 대한 이사회 결정-권고문[OECD/LEGAL/0254]을 유념한다.

소비자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OECD/LEGAL/0403]; 경제·사회적 번영을 위한 디지털 보안 위험 관리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OECD/LEGAL/0415];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OECD/LEGAL/0422], 디지털 경제 : 혁신, 성장 및 사회적 번영에 대한 선언문(칸쿰 선언문)[OECD/LEGAL/0426], 인공지능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OECD/LEGAL/0449]을 유념한다.

소비자는 시판된 제품이 합리적으로 일반적이거나 예견 가능한 사용 또는 오용하는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제품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고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소비자 제품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만 시판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소비자가 다양한 혁신 및 기술 주도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원격 등으로 제품 설계, 제조, 배송 과정을 모니터링·분석·개선하는 방식을 변모시켜온 국제·디지털 공급망의 이점을 인식한다.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는 점과, 위험한 소비자 제품은 그로 인한 부상과 사망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한편 안전 위험 관련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기술 주도 제품은 제품의 수명 기간 동안 특성과 안전성이 변화하며,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되거나 리콜된 제품이 국내외 전자상거래에서 판매되는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대두되는 다수의 안전 과제가 국제 디지털 공급망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효과적이고 혁신 친화적인 소비자 제품 안전 정책이 기술 관여와 상관없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위험성과 문제를 줄여 국내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증대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범정부적 다자간 접근이 디지털화에서 데이터 보호, 보안, 전송 등 관련 이슈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제품 안전 과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주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소비자 제품 안전 체계가 관할권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협력 강화가 특히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국경 내외의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본 권고문을 지지하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이하 ‘지지국’)의 본 권고문과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정책적, 제도적 체계가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OECD 글로벌리콜 포털, OECD 국제 제품 안전 인식 캠페인 등 디지털 정보 공유 수단과 계획을 비롯한 국제 협력이 제품 안전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가 더욱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세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제안에 대하여 :

- I. 본 권고문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제품을 포함해 제품 수명 기간 동안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은 제외한) 소비자 제품 관련 안전 요건을 다루는데 **동의한다**.

소비자 제품 안전 정책 체계

- II.** 국내외적으로 효과적인 소비자 제품 안전 정책 체계를 추진하고 시행하도록 사업자, 소비자 대표, 그 외 시민사회단체(이하 ‘기타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것을 지지국에 권고한다.

상기 취지 하에, 지지국은 소비자 제품 안전 정책 체계에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안전한 제품을 위한 사업자 행동

1. 사업자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 a) 안전한 제품을 시판하고 제품의 전 수명 기간 동안, 특히 설계,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단계에서 상기 제품 안전 관련 위험성을 고려하고 관리한다.
 - b) 합리적으로 일반적이거나 예견 가능한 사용 또는 오용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 c) 사업자가 시판한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할 의무를 지니거나 인지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제품 회수 및 리콜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유관 정부기구와 소비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효과적인 보호

2. 사업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회수, 리콜, 또는 기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며, 제품 회수 및 리콜 통지문을 발표하는 권한이 있는 정부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해당 정부기구는 권한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자원과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체계의 지속적인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필요 시 정책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3. 정부기구에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품 안전 관련 최종 결정, 가능하면 사업자의 모든 최종 조치나 책무를 공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4. 정부기구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파악하고, 가능하면 해외 유관기관 등과 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도록 국내 경보 시스템 구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5. 소비자 제품 안전 정책 체계를 개발하고 시행할 때 소비자 행동학의 통찰을 고려하고,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소비자 제품 안전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 간, 사업자와 정부기구 간에 투명성과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7. 소비자 제품 안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장려하며, 해당 기술과 관련된 위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보 공개

8. 사업자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 a)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제품 안전 문제를 보고하기 위한 방법을 적절히 통지한다.
 - b) 소비자들에게 시판한 제품 관련 안전 정보를 적시에 분명하고 정확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정보 공개는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위해가 적절한 주의문구 없이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소비자가 제품에 내재하는 위해를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연령제한 등 주의문구 표시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법, 제품 유지보수와 폐기 관련 정보도 적절히 포함한다.
 - c) 소비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일체의 안전 정보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구할 수 있게 한다.
9. 정부기구와 사업자가 기존에 있는 국제 소비자 제품 안전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제품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사업자 측 이행사항

10. 사업자가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를 비롯해 소비자 제품의 설계, 품질 보증, 제조, 공급 시 안전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시판 전후로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밝혀졌을 때 대응 가능한 방법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11. 사업자가 제품 안전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유관 정부기구, 소비자, 기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제품 안전 정부기구 측 이행사항

12. 아래의 목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효과적이고 상호 비교 가능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도록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 절차를 채택한다.
 - a)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위해 파악
 - b) 부상 정도와 패턴 이해 및 고위험군 파악
 - c) 정책과 집행 조치의 우선순위 선정

상기 접근법은 다른 관할권의 위해정보뿐만 아니라 비용편익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13. 정부기구의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관할권 내외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의 비교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표준,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방법론 등의 정보를 적절히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4. 정부기구의 위해성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국내 수준에서 적절히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품 리콜과 기타 시정 조치

15. 사업자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 a) 리콜이나 기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파악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적절하게 주의보 발령, 제품 회수, 수정,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소비자의 제품 사용을 차단한다.
- b) 소비자에게 리콜 제품, 제품 관련 위해와 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소비자와 제품 리콜에 관해 지체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소비자와 소통 시 유관 정부기구와 적절히 조율해야 하며 소통 내용에는 제품 리콜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정보도 포함한다.
- c)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적절히 제공한다.
- d) 지체하지 않고 리콜 대상 소비자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상황에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마련한다.
- e) 제품 식별 번호와 제품 이력 추적 정보를 마련한다. 그리고 유관 정부기구가 상기 정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f) 자사가 실시한 제품 리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며, 필요시 자사의 리콜 전략을 조정하고, 유관 정부기구에 이를 보고해 정부기구가 상황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16. 정부기구, 사업자, 기타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해 리콜 계획·착수·시행과 홍보, 소비자와의 효과적인 리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침과 국제 표준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17. 유관 정부기구와 사업자가 해당 관할권의 제품 리콜 정보를 국내 수준에서 모

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적절히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18. 사업자가 적합한 생산 및 품질관리 기록을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유관 정부기구가 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 제품 안전 인식

III. 지지국이 사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서로 협력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이는 연령, 수입, 장애, 읽기쓰기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 다양한 그룹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고안해야 한다.

상기 취지 하에, 지지국은 :

1. 해당 관할권에서 적용되는 관련 소비자제품안전법과 법적 요건에 관한 공식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소비자 제품 관련 위험을 파악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리는 인식 개선 활동을 적절히 개발해야 한다.

국제 협력

IV. 제품 안전 정부기구는 다른 관할권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잘 알며, 필요 시 자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명심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지지국에 **권고한다**.

상기 취지 하에, 지지국은 :

1. 소비자 제품 안전 관련 정부기구 간에 효과적인 정보 공유 계획을 적절히 개발해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a) 소비자제품안전법, 규정, 가이드라인, 공식적으로 발표한 법안과 규정안
- b) 제품 회수, 금지, 리콜 및 기타 시정 조치 등의 개별 조치
- c) 위해정보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발하거나 지원해 대학, 사업자 및 그 외 단체가 착수한 연구 과제
- d) 위해성 평가 방법론 및 관행
- e) 신규 제품 안전 위험

2. 국내 소비자 제품 안전 체계를 개발할 때 다른 관할권의 규정과 양립이 가능한지 적절히 검토해야 한다.
 3. 정부 주도로 국내 표준이나 기술 규정을 개발하거나 검토할 때 기존의 국제 표준에 맞출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4. 국제 표준의 개발과 홍보에 참여하며, 사업자와 기타 이해관계자가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5. 사고에 적시 대응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비지지국을 포함한 다른 관할권에서 판매되는 것을 감지 및 저지하기 위해 OECD 글로벌 리콜 포털 등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 공유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6. 합동 감시와 집행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 비지지국을 포함하여 서로 적절히 협력해야 한다.
 7. 소비자 제품 안전 관련 국제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개발하고, 사업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캠페인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8. 사업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와 서로 협력해 위해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국제 위해정보 분류 체계 및 절차를 적절히 개발하고, 기존에 정착된 시스템의 분류 체계와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 V. 사업자와 기타 이해관계자가 소비자 제품 안전에 기하기 위해 본 권고문을 확산하고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VI. 지지국과 사무총장에 본 권고문을 확산할 것을 요청한다.

VII. 비지지국에 현 권고문을 적절히 고려하고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VIII. CCP에 WPCPS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다 :

- 1) 본 권고문 이행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본 권고문 이행을 지원하도록 모범사례 지침을 개발한다.
- 3) 전 세계의 리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기 위해 OECD 글로벌리콜 포털을 이용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4) 권고문 채택 후 5년 이내에, 그 후에는 최소 10년마다 권고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